

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

신고번호	
대표자 성명	
생년월일	
주소	
명칭	
소재지	
업종	
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0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

유의사항

- ※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※ 위 기재사항 중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